

私立大學에 의 財政 支援 방안

申 仲 植
(國民大 教育學科)

우리나라 高等教育의 75%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 재정의 재원을 보면 그 대종이 학생 납입금으로 되어 있고 유지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이나 국고 지원은 매우 영세한 실정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84년 기준으로 14개 사립대학의 교육비 세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세입원의 80.18%가 학생 납입금, 1.96%가 입학금, 0.88%가 입시 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되어 있어 결국 학생 부담 의존율이 83% 정도로 되고, 재단 전입금은 4.02%, 기부금 및 국고 부담금이 2.16%로 되어 학생 납입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배종근, “대학 단위 교육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서, 84-8-29, 1984, p. 31).

1983년 현재 일본의 사립대학 교육의 재원별 현황을 살펴 보면 연방 정부 및 지방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14.7%이고, 학생 의존도는 40% 정도였다(일본 문부성 통계과, “교육 지표의 국제 비교”, 1986). 또한 미국에서도 연방 정부나 주 정부가 사립대학 재정의 16.8% 정도를 부담해 주고 있고, 학생 납입금 의존도는 50% 미만으로 되어 있어(NCES, *The Condition of Education*, 1985),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재정 실태와는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에서는 학생 납입금 의존도는 40~50% 정도이고, 법인 전입금은 20~25%, 기부금 및 국고 지원금이 20%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재정이 얼마나 취약하고 학생 납입금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학이 해방을 전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일부 사립대학을 제외하고는 그 역사가 짧고 산업 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채 1차 산업을 기반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학교 설립 당시에 보유했던 재산은 임야와 농지 등 비수익성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도 많은 재산이 학생 증원에 따른 수용력 확충에 투입되어 현재 일부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학의 재정 규모에 비해 총량 규모면에서나 1인당

교육비면에서 볼 때 약세를 보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립대학 재정의 영세성을 모면하는 길은 학생 납입금 인상, 유지 법인의 지원 증대, 국고 지원 증대, 기부금 활성화 등 여러 가지로 제시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영세한 재단의 지원 증대를 기대하거나 학생 납입금 인상에 기대하거나 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고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사립대학에 재정 지원 및 보조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 내지 주장의 근거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대학교육의 효과가 사회 통합, 사회 총원, 사회 혁신 내지는 사회 이동 촉진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대학교육을 위한 교육비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부에서는 물가의 상승, 국민 부담 능력의 한계 등 국가 재정 정책 입장에서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가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셋째,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계기로 각 대학은 자의·타의에 의해 교육의 질적 개선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될 여건에 처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 줄 소요 재원을 스스로 해결할 형편이 못되고 있다.

이상의 몇 가지 근거와 필요성에 입각해 볼 때 학생들의 요구와 국가·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소요 재정을 대학 스스로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정부 당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988년도 문교 예산서에 나타난 사립대학과 관련된 재정 지원 및 보조에 관련된 사항만 발췌해 보면 ‘사립 공과대학 실험·실습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사립대학 시설 확충 장기 용자금 이자 보전’, ‘대학별 특성 학과 육성’, ‘학술 연구비 지원’, ‘대학 교수 국비 해외 연수’, ‘대학생 학자금 용자 이자 지원’ 등 극히 한정된 부분에 한정된 액수를 그저 명목상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에 제시한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 지원 실태를 보면 너무 유명무실하고 이를 단시일내에 크게 개선하기란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볼 때 차선책으로 간접적인 지원 방법을 통해 대안을 찾는 것이 보다 낫지 않을까 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지휘·감독 위주의 사립학교법을 지원·육성 위주의 사학육성법으로 개정하고 사학 육성 기금의 확보 방안의 하나로 가칭 ‘사학 금고’ 같은 특수 법인체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학 금고를 활성화하여 국·사립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자금을 장기 용자해 줌으로써 사립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필리핀에서는 이미 1968년에 사학 지원 기금이 조성되어 사학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고, 일본도 1975년에 사학진흥조성법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비의 50%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대만에서도 정부로부터 사립대학에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속히 '사학 특별 기금' 내지는 '사학 대여 기금 제도(private education loan fund)'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국·공·사립대학간의 교육 격차 해소에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6차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의 교육 부문 계획 안에 1,500억 원 규모(정부 출자 300억 원, 자금 관리 특별 회계 융자금 75억 원, 민간 기부금 및 사학 법인 출자금 250억 원, 기타 차입금 250억 원)의 사학 진흥 재단의 설립 방안이 구상되고 있어 비교적 현실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으나 기금 규모의 확대에 대한 후속 조치가 계속되어야 하고 정부 지원의 확대 및 사학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되고 있다.

셋째, 또하나의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의 하나로 사립대학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학에 제공되는 기부금은 그 전액을 비지정 기부금에 포함시켜 전액 손비 처리해 주어야 되고, 사학 재단이 운영하는 수익 사업의 이익율이 법정 이익율에 미달할 경우에 추정되는 증여세의 부과 규정도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간 산업체에서 인력 사용 및 인력 양성 명목으로 사립대학에 투자하는 기부금도 전액 손비 처리해 주어야 하고 이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사학 육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산업체에 분담시키는 정책이 입안·시행되지 않고서는 학생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영세 재정하의 사립대학에게 사립대학 교유의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재정 여건이 크게 향상되거나 긴축 재정 정책이 지속되는한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더라도 사학도 공학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갖고 있고 국가가 담당하여야 할 교육에 대한 역할을 사학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볼 때, 국가에서 기본 정책만 세워지면 간접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서러라고 사료된다. 즉 사학 진흥 기금을 조성하여 장기 저리로 사립대학에 융자해 주든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보조해 주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 세계상의 지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기금 조성의 상당한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상당한 부분은 많은 고급 인력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기간 산업체에서 분담하도록 해 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매 회계 연도마다 소요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이 액수도 연차적으로 증액되어야 하며 산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지원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